

- ☐ 2004. 4. 배포
- ☐ 사진 없음
- ☐ 총 5 쪽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환경관리공단<br>기술관리처 | 처장 김인섭<br>팀장 박종환 | 전화<br>(메일) | 032-560-2188<br>(koetv@emc.or.kr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 환경신기술(ET) 제도개선 설명회

- ☐ 인센티브 확대, 사후관리 강화, 심사방법 개선 등 제도 개선내용 소개
- ☐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부각 기대

- ☐ 환경관리공단(이사장 : 李萬儀)은 환경부의 후원으로 『환경신기술 평가제도 설명회』를 4월 16일(금) 오후 3시부터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(KEI)에서 기술개발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- ☐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환경신기술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관련 법률 및 고시 내용을 비롯하여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.
  - 작년 12월 11일 개정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‘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가점부여 및 공공 기관에서 발주시 환경 신기술 우선 활용, 신기술 지정 취소, 평가시 현장조사 실시’ 등 실용화 보급 촉진책 및 강화된 신기술 요건과,
  - 올해 1월 12일 고시된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관한 규정에 의거, ‘심사기준의 점수제, 신청기술의 사전조사 및 인터넷 공개, 재심사제도 도입, 유효기간 연장심사방법 제정’ 등 평가기준을 체계화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,
  - 또한 ‘환경신기술 마크 사용, 심의위원 선정, 환경기술검증비용 지원, 환경신기술 전용웹사이트 이용, 신기술 탈락사례’ 등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·응답을 통해 자세히 소개된다.

- 환경부에서는 우수한 신기술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환경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에 환경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, 환경신기술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환경신기술발표회 및 각종 전시회 개최, 환경신기술 전용 웹사이트(www.koetv.or.kr) 운영, 환경신기술편람 제작·배포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여 왔으며,
- 이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의 입찰시 현장 적용실적 인정 및 가점 부여,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시 신기술배점 부여, 공공시설에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신기술 장려금제 및 성공불제 대상, 중소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환경기술검증비용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여 왔다.
- 금번 실시되는 설명회를 계기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환경신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, 그 일환으로 금년 5월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기술 제도 및 신기술내용에 대해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신기술 설계편람 및 신기술요약집 등 인쇄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있다.
- 참고로 정부에서는 우수한 신기술의 보급촉진 및 환경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'97.12월 환경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'04.3월 현재 95건의 기술에 대하여 환경신기술 지정 등 환경기술평가를 완료한 바 있으며, '03년까지 평가된 기술 91개 중 56개의 신기술이 684개 현장(공사금액 약 8,073억원)에 적용되는 등 동 제도가 기술개발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환영받는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.

#### 〈참고자료〉

1. 환경신기술제도 개선내용
2. 환경기술평가제도 개선내용 설명회 안내 1부

## 환경신기술평도 개선내용

### ○ 법률 및 고시 개정내용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개정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률<br>(2003.5.29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신기술에 대하여 환경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, 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함</li> <li>○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토록 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행령<br>(2003.12.1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기술평가방법에 현장조사를 추가</li> <li>○ 환경신기술지정 취소 요건 명문화</li> <li>○ 환경신기술에 환경신기술표지를 표시</li> <li>○ 공공기관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에 환경신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</li> <li>○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연장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행규칙<br>(2004.1.16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의 재발급</li> <li>○ 환경신기술표지의 사용방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시<br>(2004.1.12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신기술지정 평가기준을 종전의 신규성·진보성·타당성에서 신규성·우수성으로 하며, 이중 우수성 평가는 점수제로 함</li> <li>○ 신청기술의 사전 조사제를 도입</li> <li>○ 신청기술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</li> <li>○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 제심사제 도입</li> <li>○ 신기술지정 취소관련 사전조사 및 공고 내용 규정</li> <li>○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연장요건, 신청서 제출, 심사방법 등을 정함</li> </ul> |

### ○ 주요 개정사유

| 항 목               | 개정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기술<br>우선활용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공공기관 발주시 신기술<br>우선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신기술 보급촉진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가기준심사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항목: 신규성·진보성·타당성</li> <li>- 방법: 평가심의위원회 의결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항목: 신규성·우수성</li> <li>- 방법: 신규성:평가심의위원회 의결<br/>· 우수성:점수제(80점이상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기술 평가기준 체계화하여<br/>심사의 투명성 제고</li> <li>○ 신기술 심사 강화</li> </ul> |
| 신청기술의<br>사전조사제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전문기관에 신청기술의<br>유사기술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신기술의 변별력을 높이기<br>위하여 기존기술과의 차별성<br>등을 조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기술 내용<br>관보공고   | 관보공고(30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보공고(30일)</li> <li>- 신청기술의 내용 인터넷<br/>공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이해관계인이 신청기술의<br>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<br>공개제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기술지정 취소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신기술지정 취소요건 명문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신기술의 사후관리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환경신기술의<br>유효기간 연장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유효기간 연장 명문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우수한 신기술의 유효기간<br>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〈참고자료 2〉

## 환경기술평가제도 개선내용 설명회 안내

### 가. 설명회 개최 목적

- 환경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신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, 인센티브를 확대한 내용에 대하여 개발자 및 수요자에게 안내함으로써 환경기술평가를 활성화하고
- 환경산업체에 개선된 평가제도를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시켜 평가제도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함

### 나. 일시 및 장소

- 일시 : 2004. 4. 16(금) 15:00
- 장소 :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대강당
- ※ 회의주제 :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

### 다. 참석대상

- 환경신기술지정업체 및 환경산업체
    - 환경신기술지정업체의 경우는 필히 참석바람.
- (당일 환경신기술지정업체 전용웹사이트 등록 및 사용 안내 있음)

### 라. 주요 설명내용

#### < I 부 : 환경부, 환경관리공단 >

- 환경기술평가제도 개선내용 설명
  - 법률 및 고시 개정내용
    - 신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
    - 신기술의 인센티브 확대
    - 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    - 환경신기술 마크 도입 및 사용

- 환경기술평가제도 설명
  - 제도 안내
  - 심사 방법
  - 유효기간연장 안내
  - 환경신기술 인센티브 안내
  - 신기술 탈락 사례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
- 환경신기술실용화지원사업(환경기술검증 비용지원) 안내
  - 지원내용
  - 지원대상
  - 비용지원 및 지원시기

## **<Ⅱ부 : 환경관리공단>**

- 환경신기술 전용웹사이트([www.koetv.or.kr](http://www.koetv.or.kr)) 설명
  - 전용웹사이트 구성 메뉴
  - 환경신기술지정업체 등록 및 사용 내용
- 환경신기술 관련 기타사항 안내
  - 환경신기술 모니터링
  - 2004년도 국내·외 환경기술전시회 안내
- 질의응답

**※ 자세한 내용은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(032-560-2186)으로 문의 바랍니다.**